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1

2021. 3. 2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1년 3월 15일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은여울고등학교(2021. 3. 1. 개교)가 벽지학교 ‘라’ 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라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은여울고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 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1년 3월에 개교한 은여울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앞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소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례 개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별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아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신 설>	**<신 설>**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기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개 정 안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아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세중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기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관 계 법 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

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9. 10.>